

제2장 박사과정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과 사범대학 대학원과정 이수규정에 의거하여 체육교육과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이수에 관한 요건과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영역) ① 체육교육과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스포츠인문사회 전공, 스포츠과학 전공,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으로 구성된다.

② 스포츠인문사회 전공은 스포츠교육, 스포츠문화산업 2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

③ 스포츠과학 전공은 건강운동과학, 신체운동과학 2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

④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은 일반과정과 국제스포츠행정과정(드림투게더마스터) 2개의 세부전공으로 구성된다.

제3조(수업연한 및 재학 연한)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이고 재학연한은 6년(12개 학기)이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외국인 학생 및 재외국인 모국수학생은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학점취득) ① 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과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30학점을 포함하여 통산학점 69학점(논문연구학점 12학점 포함) 이상으로 하며, 기초역량학점(3학점), 전공역량학점(21학점), 연구역량학점(15학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 (기초역량학점) 대학원공통역량교과목 중 3학점을 취득할 것. 다만, 석사과정에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원공통역량교과목을 3학점 추가 이수한 경우, 통산학점 인정 신청자에 한해 통산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가. 대학원공통역량교과목 중 연구윤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할 것

2. (전공역량학점) 주전공학점 15학점을 포함한 전공학점 21학점을 이수할 것

가. 주전공학점이란 해당 학생의 세부전공과 관련된 체육교육과 교과목 학점을 의미한다.

나. 전공역량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인정함

3. (연구역량학점) 논문연구학점 12학점, 체육연구설계법 3학점을 포함한 15학점을 반드시 취득할 것. 다만, 본과 석사과정 중 체육연구설계법을 이수한 자는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학점은 연구역량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대체함.

가. 연구역량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인정함.

나.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은 대학원논문연구학점으로 1, 2, 3, 4학기에 각 3학점씩 취득하여 총 12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또한 해당 학점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하도록 하며, 지도교수의 대학원논문연구 수업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② (선수학점) 체육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혹은 석사학위를 최소 1개 이상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선수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수과목은 본과 학부 및 대학원 전공과목(실기 포함) 9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선수과목의 학점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취득가능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 가능한 학점은 전일제 학생의 경우 학기당 12학점, 비전일제 학생의 경우 9학점이다. 단, 비전일제 학생의 선수학점 취득에 한하여 3학점을 추가 취득할 수 있다.

1. '전일제학생'은 학과(조교실, 진흥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센터 등)에서 학과를 위해 봉사하거나, 실험실, 교수연구실 등에서 매일 연구하면서 수강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비전일제 학생'은 교외에 취업하여 논문연구 및 수강을 목적으로 주당 2일 이상 출석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2. 한 학기 혹은, 학기 중 일부라도 직업을 가져 비전일제로서 재학한 대학원생은 원칙적으로 비전일제와 동일시하며, 지도교수 승인 하에 등록학기 기준 세 학기 이하를 비전일제로 다닌 경우에 전일제와 동일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음

④ (석·박사 간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학칙 제71조(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 및 2001 서울대학교

교과과정해설 “5” 항의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이수』의 “나” 『교과학점통산』 관련근거에 의거 과정간 학점인정 및 석·박사 교과학점을 통산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첫째 학기 수업수주 1/4선 내(3, 9월)에 절차를 밟아 학점인정을 받는다.

제5조(수료요건) ① 석사과정 중 학위논문 없이 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생은 박사 수료 전까지 KCI 등재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학술지에 단독명의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저자(본인이 주저자)로 논문 1편을 게재하여야 한다. 위에 명시된 논문은 제9조 2항에 명시된 논문 2편 및 제10조 2항에 명시된 논문 3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조(논문지도 교수 선정 및 변경) ① 논문지도교수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서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개정 2015. 9. 24.>

② 제1항의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경과한 후에도 소속대학장이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제2항의 변경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학위과정에서 4개 학기 이상(비전일제의 경우 5개 학기 이상) 등록하였으며, 직전 학기 기준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2. 직전 학기 기준, 본과 대학원 전공교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체육연구설계법, 선수과목 학점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②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성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은 대학원 입학고사에서의 외국어시험 합격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음

2. 외국인학생의 경우 교무처에서 주관하는 한국어시험에서 합격하여야 함. 단, 대체과목으로 개설된 ‘한국어와 한국문화 1, 2’를 수강하고 그 성적이 ‘C-’ 이상 또는 ‘S’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어시험을 면제하되,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3. 논문제출자격 종합시험은 체육교육과 교과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중 직전 학기까지 수강한 교과목 가운데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총 3과목(전공 1, 기초 2)을 선정하여 응시함. 다만, 필수과목인 체육연구설계법은 응시과목에서 제외함

제8조(논문심사위원)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교외의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 체육교육과 명예교수는 내부 인사로 인정된다.

③ 교외 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타교교원 : 본교교원과 동일한 기준

2. 연구기관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3. 기타 : 위 ①, ②의 기준에 해당되는 근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본과 대학원 운영위원회 또는 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구성 시기는 논문계획서 제출 1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9조(논문계획서 제출) ① 박사학위 논문계획서의 발표자격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기합격하고 본 조 2항의 논문게재를 완료한 수료자에게 주어진다. 전일제 학생의 경우 등록학기 기준 6학기부터, 비전일제 학생의 경우 7학기부터 논문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교수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 ② 논문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2편의 논문을 체육관련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최소 1편은 단독명의 혹은 지도교수와 공동명의여야 한다. 단, 최대 1편까지 국제학술대회 영어 구두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본교 박사과정 및 타교 박사과정 중 게재한 논문만을 인정한다.) [2024.2학기 계획발표자부터 적용]
- ③ 논문계획서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의 승인을 얻은 후 조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수 및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제10조(논문심사 및 제출)** ①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박사과정 중 39학점 이상 취득(논문제출학기 중에 취득예정학점 포함)한 후 제출할 수 있다.
- ② 논문결과 제출 이전까지 제9조 2항에 명시된 논문 2편을 포함하여 총 3편 이상의 논문을 체육관련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그 중 1편 이상은 단독명의 또는 지도교수와 공동명의이어야 한다. 단, 최대 1편까지 국제학술대회 영어 구두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본교 박사과정 및 타교 박사과정 중 게재한 논문만을 인정한다.) [2024.2학기 계획발표자부터 적용]
- ③ 박사학위논문 제출자는 최종심사 이전에 논문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가. 논문결과 발표의 대상과 방식은 논문계획서 발표의 경우와 동일하다.
- ④ 종결심사는 8조 3항, 본조 3항에 해당하는 2회의 논문발표를 진행한 후 가능하며, 학기별 서류제출 마감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 ⑤ 박사학위논문은 박사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 2년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본 내규는 2024년 2학기 및 이후 입학생에 적용된다.